
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

● 사업목적

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**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**

● 사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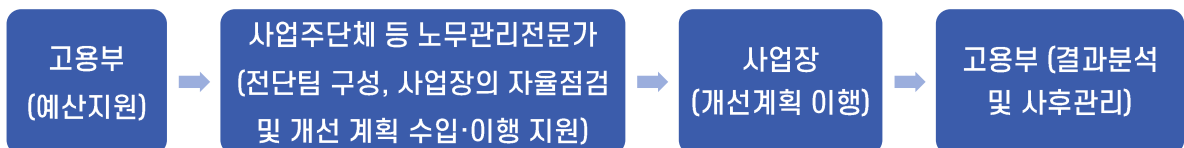
-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·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,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
 - '21년 지원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핵심 기초노동법 무료 교육도 병행 (강사는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수행)
 - * 교육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활용(고용노동부 자체 제작)
- 사업기간: 2021.1~10월

● 지원대상 사업장

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**8,500개소**(업종 무관)

* 전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일부는 사업장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지원

● 사업추진체계

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: www.moel.go.kr

●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체계도

<일반 자율개선>

